

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
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성수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0. 20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

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620호로 2025년 10월 2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사회적·심리적·경제적 요인으로 고립된 청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라.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마. 위원회의 심의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바. 전문가 자문, 상담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(안 제10조~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청년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5. 10. 2.~2025. 10. 15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국무조정실 「2024년 청년 은둔 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은둔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2022년(2.4%)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전체 청년의 5.2%에 달하며, 주요 원인은 ▲취업의 어려움(32.8%) ▲인간관계의 어려움(11.1%) ▲학업 중단(9.7%)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남.
-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는 개인의 생활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부상함.
-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은 신체활동 부족,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으로 인해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.
- 이에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규정하고, 실태조사·지원사업·민간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

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“청년”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청년의 범위로 규정하고, 사회적 고립청년의 개념을 정의하여 조례 적용대상과 정책 추진의 대상을 명확히 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안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.
- 안 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방향, 추진목표, 전달체계 구축, 자원 조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함.
- 안 제6조(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)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, 복지관, 경찰서 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.
- 안 제7조(실태조사 등)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경제상태·생활양식·정신건강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 여건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

였으며, 조사·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.

- **안 제8조(위원회의 심의)**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수립·점검·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하도록 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**안 제9조(지원 사업)**는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인 일자리·인간관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동체 참여, 일자리, 심리·정서, 사후관리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, 이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- **안 제10조(민간전문가 활용)**는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**안 제11조(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)**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이해를 높이고 청년의 회복 및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.
- **안 제12조(협력체계 구축)**는 중앙행정기관·타 지방자치단체·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.
- **안 제13조(표창)**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

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.

- 안 제14조(비밀 준수의 의무)는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명시하여,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, 주요 원인에 대응하는 지원사업 추진과 실태조사 근거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.
-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청년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참고 자료

1

청년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3.21.>

제21조(청년 복지증진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3조(청년 문화활동 지원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